

## 베이비 박스의 도덕성 논쟁

### 정창록\*

#### I. 서론

2011년 하반기에 ‘베이비 박스(baby box)’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베이비 박스란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이 남몰래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벽 밖 쪽 문을 열고 아기를 넣어 두면 잠시 후에 벨이 울려 벽 안 쪽 문에서 아기를 데려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09년 이종락 목사가 교회 담장에 설치하였는데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할 처지에 있는 미혼모의 아기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실제로 장애를 갖고 있거나 미혼모의 편지와 함께 발견된 신생아 26명이 베이비 박스의 종을 울렸다. 만약 베이비 박스가 없었더라면 추운 날씨에 발견된 아기들은 저체온증으로 숨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관악구청은 비인가 시설에서 아기를 돌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베이비 박스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이

비 박스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지 유기를 조장하는 장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베이비 박스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KBS가 2011년 11월 16일에 이에 관해 보도를 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두고 조선일보는 2011년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베이비 박스’에 관한 의견을 묻고 찬반을 투표하는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68명 참여자 중 59명인 87%가 ‘현실적 필요성 인정해야, 찬성’에 동의했고, 9명인 13%만이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 반대’의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개인이 어려운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어찌 철거하라 하는지!”라고 의견을 말했다.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아동 유기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베이비 박스의 설치를 비난하기도 한다. 한편 KBS는 2011년 상반기 경찰에 신고되어 버려진 영아만 65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을 덧붙여 전했다.

베이비 박스의 도덕성 문제는 인공 유산이나

교신저자: 정창록,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053-950-5868, canthos@knu.ac.kr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안락사의 도덕성을 다루는 것처럼 복잡하고 결론을 쉽게 낼 수 없는 것이다. 그 어려움은 한 인간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에 있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윤리학적 입장에서 재구성하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베이비 박스에 관한 대립된 시각을 정리해 볼 것이다. 베이비 박스는 과연 영아 유기용인가 영아 보호용인가? 그 다음으로 윤리학의 대표적인 입장인 의무론과 목적론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 볼 것이다. 또한 현대 의료 윤리론의 몇몇 원칙들을 이 사태에 적용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입장에서 이 논쟁의 도덕성을 다루어 볼 것이다.

## II. 베이비 박스의 기능에 관한 대립된 시각

이 장에서는 우선 베이비 박스의 기능에 관한 대립된 시각에 관해 정리해 보겠다. 유기(遺棄)란 명사로서 1) 내다 버림, 2) 보호할 사람이 보호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일을 뜻한다. 유기죄(遺棄罪)란 늙은이, 어린이, 병자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돌보지 않음으로써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초래했을 경우에 성립되는 죄이다. 보건복지부와 관악구청은 베이비 박스가 부모의 죄책감을 덜어주어 아동의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하며 철거를 요구하였다. 즉 베이비 박스가 설치된 이후 그 곳에서 발견된 아기들이 2011년 11월까지 26명에 이르는데 이 박스가 없었더라면 이들 중의 일부는 부모가 그대로 길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철거를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가받지 못한 시설인 베

이비 박스를 통해 임의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129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쪽에 전화를 해 아기를 기를 수 없을 경우 상담할 수도 있는 등 이미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베이비 박스 같은 것이 있으면 더 쉽게 아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sup>1)</sup>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아기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해서 유기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면 안 된다”며 이 목사를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sup>2)</sup> 네티즌 중에도 “능력 없는 미혼모나 미성년자들도 불장난을 해 아이를 갖더라도 저 박스에 넣어두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기 유기를 더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sup>3)</sup> 이에 대해 이 목사는 “철거를 주장하기 전에 양육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복지환경부터 마련하라”고 반박하고 있다.<sup>4)</sup>

한국일보 2011년 12월 1일자 기사에 의하면 이 목사는 1999년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을 거두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대 병원에서 14년 동안 중증 뇌성마비 아들을 돌보던 이 목사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장애를 가진 외손녀를 부탁했다. 이러한 부탁에 평소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면서 언젠가 주위에서 받은 도움을 갚아줬다고 생각하던 이 목사는 흔쾌히 할머니의 외손녀를 맡기로 했다고 한다. 기사에 의하면 그때부터 ‘이 목사가 장애가 있는 영아를 대신 키워준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를 버린다는 죄책감을 느낀 탓인지 아이를 교회 앞 길바닥에 놓아두고 갔다고 한다. 2007년 12월 유난히 추웠던 어느 날 새벽 3시에 아기

1) 한국경제. '베이비 박스' 있어야 할까요? 2011. 11. 18.

2) 머니투데이. 베이비 박스, 찬반 이전에 '사회적 편견 해소 우선'. 2011. 11. 17.

3) 한국경제. 위의 글(주1). 2011. 11. 18.

4) 머니투데이. 위의 글(주2). 2011. 11. 17.

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 목사가 나가보니 갓 태어난 아이가 얇은 종이박스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는 저체온증으로 숨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일을 겪은 이후에 이 목사는 2009년 12월 가로 70 cm, 세로 40 cm, 높이 55 cm에 신생아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다고 한다. 기사에서 이 목사는 “영유아들이 쓰레기장이나 화장실에 버려지는 것을 보다 못해 설치했는데, 막상 이듬해 3월 대낮에 갓 태어난 아이가 베이비 박스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하도 기가 막혀 아내와 함께 30분 넘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했다. 이 목사는 아이를 버리려 온 부모들을 설득해 직접 키우도록 한 경우도 23건이나 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이 목사와 부인 정병옥 씨는 버려진 아이 가운데 장애를 지닌 6명을 입양하고 4명에게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베이비 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자 2011년 4월부터 베이비 박스를 통해 아이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해 시설 입소나 입양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sup>5)</sup>

관악구청의 철거 요청에 대해 이 목사는 “베이비 박스가 없는 세상이 오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나”라면서도 “길바닥에 버려진 아기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미 외국에는 베이비 박스가 설치되고 있다며 이 목사의 편을 드는 입장도 있다. 즉 독일의 한 산부인과에는 ‘사랑의 바구니’, 일본의 한 병원에는 ‘신생아 포스트’, 체코의 가톨릭병원에는 ‘베이비 박스’ 등 아

이를 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이를 비교적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유독 우리는 이를 제도화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 목사의 입장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sup>6)</sup> 네티즌 중에도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베이비 박스는 아기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다”며 추운 겨울 날씨에 연약한 아기들이 동사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87%의 네티즌이 베이비 박스의 설치에 찬성한다.<sup>7)</sup>

생명 의료 윤리는 단순히 ‘윤리’뿐 아니라 법률 및 사회 제도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생명 의료 윤리가 윤리적 문제가 될 때 그것의 많은 수는 법적인 문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sup>8)</sup> 원래 생명의료윤리와 법은 기존의 윤리와 법이 답을 찾지 못하는 지점에서 고민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자면 안락사가 그러하다. 안락사는 생명의료 윤리 분야의 대표적 논쟁 주제인데 기존 윤리와 법은 적극적 안락사를 ‘살인’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생명의료윤리 분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도덕적 행위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제도화되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베이비 박스 설치도 생명 윤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비난받을 불법적인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현재 베이비 박스 설치에 한국의 법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쪽에서는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 영아 유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이 목사의 집 앞

5) 한국일보, 베이비 박스가 영아 유기 조장한다? 정부 대책 내놔으면 만들지도 않았다. 2011. 12. 1.

6) 한국경제, 위의 글(주1), 2011. 11. 18.

7) 조선일보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베이비 박스’에 관한 의견을 묻고 찬반을 투표하는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68명 참여자 중 59명인 87%가 ‘현실적 필요성 인정해야’라며 찬성했고, 9명인 13%만이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대의 의견을 냈다. <http://blog.naver.com/gkssk0702/143436009>, 2012년 5월 5일 방문.

8) 권복규, 김현철, 생명윤리와 법,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15-16.

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 목사는 선한 뜻, 즉 앞으로 버려질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설치하고 나니 영아유기를 위한 장소가 되어버렸고 실제로 영아유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적 현상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관악구청이 지적하는 바는 법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은 결과적으로 접근하고 도덕은 결과를 넘어 동기까지 고려한다. 이 목사는 버려질 아기를 돕기 위해 그렇게 했으므로 자신의 입장을 포기할 수 없다. 다음에 이렇게 맞서고 있는 두 입장에 대해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의무론과 목적론의 적용과 평가

본 장에서는 윤리학의 대표적인 입장인 의무론과 목적론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의무론의 대표적인 입장은 칸트 윤리학에서 구성하고, 목적론의 대표적인 입장은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서 구성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칸트 윤리학이나 공리주의의 입장을 정밀하게 구성하여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자는 베이비 박스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을 각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정리하여 본 논의에 적용시켜 보려 한다.

먼저 의무론의 입장에서 베이비 박스 논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칸트는 인간의 가치를 절대적이라고 본다. 인간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한갓 수단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가장 피상적인 단계에서 이것은 우

리가 다른 인간들에게 선행을 해야 할 엄격한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피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9)</sup> 우리는 사람들을 조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어떤 사람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원론』에서 도덕 법칙으로 ‘너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도록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sup>10)</sup>라고 말한다. 또한 의무의 보편적인 명법은 소위 자연 법칙의 명식, 즉 ‘네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를 통하여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듯이 행위하라’<sup>11)</sup>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칸트는 자살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경우와 재능의 개발과 타인을 돕는 것을 예로 들며 이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보편적인 도덕적 명법이 되거나 되지 않는지에 관해 예증한다. 마지막 예에서 칸트는 자신의 생활이 풍요로운 어떤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는 것을 비판한다.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타인이 힘들어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든 하늘이 내린 복대로 행복하면 좋은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서 아무 것도 빼앗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나는 그들의 행복이나 힘들어 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생각이 전혀 없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자. 칸트는 이러한 입장이 비록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원리가 자연의 법칙으로서 어디서나 타당

9) Rachels J.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도덕철학. 서울 : 서광사, 1989 : 196.

10) Kant I.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In: Immanuel Kant Werkausgabe VII, hrsg., W. Weischrkamp Taschenbuch Verlag, 1974 : 51.

11) Kant I. 위의 글(주10). 51.

하게 되기를 의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칸트가 볼 때 이는 자기모순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당사자도 다른 사람의 사랑과 동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

우리는 도덕적 행위의 판정에 있어 이상과 같은 칸트 윤리학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았는가?, 2)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았는가?

1)의 기준을 베이비 박스의 도덕성 논란 사건에 적용시켜 보자. 베이비 박스가 어떤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설치한 이 목사와 철거를 주장하는 입장의 사람을 어떤 사람에 대입시키기로 하겠다. 이 목사는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만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는가? 베이비 박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철거를 주장하는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로는 이 목사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베이비 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혹자는 이 목사의 베이비 박스에 대한 마음속의 동기는 알 수 없으며 이 목사가 그로 인해 스스로 만족한다면 이 역시 자신의 이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겠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적절하지 못하다. 타인의 동기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목사가 베이비 박스로 인해 금전적 혜택을 얻거나 일신의 평안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목사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허가하지 않은 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관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있다.

한편 우리는 1)의 기준으로 베이비 박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관악구청이나 보건복지부의 담당관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에 반대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베이비 박스가 철거된다고 하여 담당관이 명예를 얻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담당관이 관할 구역 안에서 영아 유기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베이비 박스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러나 우리는 담당관의 이러한 판단을 도덕적으로 유관한지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2)의 기준을 베이비 박스의 도덕성 논란 사건에 적용시켜 보자. 이 목사가 베이비 박스를 철거한다면 이 목사는 과연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는 것이 되는가? 이 목사가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게 된 것은 ‘자신의 집 앞에 아이를 두고 가는 사람이 계속 생긴다’는 경험적 사실에 기인한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에 자신의 집 앞에서 발견된 영아가 저체온증으로 죽을 뻔했다는 사실로 인해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긴급 구호 시설로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였다. 우리는 이를 베이비 박스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구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두게 되면 박스 안에 불이 켜져 아이의 체온을 유지시키고 곧 종이 울려 아기를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집 앞에 누군가는 아기를 두고 갈 것이고, 그러한 비교적 예상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베이비 박스를 철거하는 것은 곤경에 처한 타인을

12) 우리는 칸트의 정언 명법의 제1법칙으로 규칙의 논리적 보편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보편 자체의 법칙만이 아니라 자율의 법칙, 목적 자체의 법칙으로 불려지는 또 다른 정언 명법들을 칸트 윤리학에서 살펴볼 수 있다. 칸트는 정언 명법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된 명식들을 통해 모든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도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대해야 한다는 칸트의 도덕 사상에 접근할 수 있다. Kant I, 위의 글(주10), 54.

돕지 않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의 담당관이 이 목사에게 베이비 박스의 철거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누군가 이 목사의 집 앞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없도록 하여 이 목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의 상근을 요청하여 24시간 대기하는 방식으로 그 누구도 두 번 다시 이 목사의 집 앞에 장애를 가진 유아나 갓 태어난 유아를 둘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 한하여 베이비 박스의 철거 요청은 유효하다. 그러나 베이비 박스만 철거하고 그 누군가 다시 유아를 겨울철 새벽에 이 목사의 집 앞에 두고 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담당관은 예상되는 사태에 도덕적으로 유효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목적론적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윤리학에서 목적론적 입장의 대표는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우리 행동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가 행복을 더 많이 가져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벤담과 밀에 의해 주창되었다. 벤담은 하나의 궁극적인 도덕 원리, 즉 “유용성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원리는 우리가 여러 선택 가능한 행동들이나 사회 정책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그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전체적 결과를 낳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sup>13)</sup> 밀은 도덕을 “인간의 행위를 위한 규칙들과 계율들”이라고 말했는데, 그것들에 의해 하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모든 인간

에게, 그리고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이 허용하는 한 감각적 존재 전부에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묘사하였다.<sup>14)</sup> 레이첼즈는 벤담과 밀의 고전적 공리주의를 세 가지 명제로 요약한다. 첫째, 행위들은 오직 그 결과에 의해서만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야 한다. 둘째, 결과들을 평가하는 데 문제가 되는 유일한 것은 행위들에 의해 생겨나게 될 행복과 불행의 양이다. 셋째, 초래되어질 행복 또는 불행을 계산함에 있어 어떤 사람의 행복도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 각 개인의 행복은 똑같이 중요하다.<sup>15)</sup> 이러한 목적론적 입장에서 베이비 박스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베이비 박스와 관련하여 1) 영아 유기자, 2) 영아, 3) 보호자로서 목사, 4) 지역 관찰 구청의 네 종류의 당사자가 있다.

1) 영아 유기자 즉 영아의 부모는 아기의 존재가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 아기를 버리는 행위는 자신의 인생의 쾌(快)를 증진시키는 것이기에 목적론적 입장에서 볼 때 나쁜 일만은 아니다.<sup>16)</sup> 혹은 목사가 부모보다 아기를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일 수 있다. 영아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행위는 영아 부모 자신의 삶의 쾌와 영아 삶의 쾌를 증진시키는 행위이다.

2) 영아의 입장에서 볼 때 영아 유기라는 사건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므로 엄청나게 나쁜 일이다. 영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오직 울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을

13) Rachels J. 위의 글(주9). 138.

14) Rachels J. 위의 글(주9). 148.

15) Rachels J. 위의 글(주9). 155-156.

16) 현대 공리주의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유아 살해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는 임신 후기의 장애를 가진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 정당하듯이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죽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Singer P. Rethinking Life and Death: the Collapse of Our Traditional Ethics. New York : St. Martin's Griffin, 1994 : 129.

견뎌 내거나 도중에 죽거나 할 수 밖에 없다. 영아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베이비 박스는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영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보호장비이다.

3) 우리는 이 목사가 어떻게 하여 버려지는 아기를 통해 자신의 삶의 쾌를 증진시키는지에 관해 알 수 없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영아의 존재는 목사의 삶에 고통을 더 한다. 목사는 이미 6명의 장애아를 입양하여 키우고 있다. 이에 더하여 왜 자신의 삶에 새로운 고통을 주려는지에 관해서는 쾌락을 증시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4) 지역 관할 구청의 입장에서는 유기되는 영아가 없으면 그것이 좋은 실적이 되는 방식으로 쾌를 증진시키는지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베이비 박스의 설치로 관할 지역에서 버려지는 영아는 있지만 죽어나가는 영아가 없는 것이 더 좋은 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 IV. 베이비 박스 설치에 반대하는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 검토

이 장에서는 베이비 박스 설치에 반대하는 도덕적 추론을 구성해 보고 그 정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관할 구청의 입장과 동일하게 베이비 박스가 부모 자식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으며 미끄러운 경사길로 이끌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 살펴보겠다. 즉 “아이들은 낳은 부모가 최선을 다해 돌봐야 되는데 많은 고민 없이 아이를 버리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는 보호시설에 맡기면 될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네티즌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면 자기 아이를 버리기 까

지 할까’라고 생각하면 베이비 박스의 존재 취지가 어느 정도 공감 되지만 아이를 버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유아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불법적인 일을 마치 합법적으로 하라고 만들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라는 의견을 냈다.<sup>17)</sup> 일부 네티즌의 의견처럼 영아 유기는 불법 행위이다. 이는 성매매가 불법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일전에 경찰이 사창가를 대대적으로 소탕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사창가의 사람들이 불법 행위인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창가를 소탕함으로써 경찰은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베이비 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함으로 철거되어야 한다면 철거된 후에 영아 유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지 베이비 박스로 인해 영아 유기가 조장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베이비 박스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이 목사 집 앞에 영아가 유기되는 사건들이 빈발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목사라는 인물이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철거해야 할 것은 베이비 박스가 아니라 이 목사의 집이 아닌가하고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살펴본 바를 근거로 이 목사의 집을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이 목사가 있는 곳이 알려지면 그곳은 또다시 영아 유기의 사건이 빈발할 장소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을 따른다면 이 목사라는 인물이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차라리 이 목사를 격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이 목사는 영아 유기를 조장

17) 일요시사, 김설아 기자, 버려지는 아기 품는 '베이비 박스' 찬반 논란, 2011. 11. 29.

함으로써 사회적 불쾌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목사를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잘못된 추론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 사건에 연관된 도덕적 추론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begging the question)란 참이라고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을 참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인간, 인간 배아와 태아에 관한 논쟁들에서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9일 된 인간 배아를 언급하면서 “단지 점 크기의 세포 조각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인간임을 결정하는 것이 유전자, DNA 또는 잠재적 가능성이 아니라 존재의 크기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비슷한 예로 “119에 전화를 걸어 자살할 것으로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선결 문제 미해결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려는 사람이 가지는 이유에 관해 질문조차 하지 않은 채, 모든 자살을 비합리적이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이와 유사하게 베이비 박스의 사례에서 “베이비 박스는 영아를 유기하는 곳이지 보호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베이비 박스를 오직 영아 유기를 위한 장치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베이비 박스가 현실적으로 영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 온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전제된 명제가 참이려면 그 명제에 합당한 경험적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로는 베이비 박스의 설치로 보호된 영아가 있다는 것은 경험적 사실이며 현재 이 목사가 베이비 박스에서 발견되는 영아들을 국가 기관의 복지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경험

적 사실이다. 따라서 베이비 박스를 영아 유기 시설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한편 우리가 도덕적 추론을 할 경우에 도덕적 쟁점에 관한 결론은 특정한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유추된다. 만일 도덕적 논증이 사실적 전제를 포함한다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를 어느 정도 관련시켜야 하는데 오직 사실 전제만 가지고 가치 평가적 결론을 이끌어 내면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에 빠지게 된다. 이를 간단히 ‘사실과 가치 사이의 비약(jumping the fact-value gap)’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논증을 펼쳤다고 해 보자.

<추론 가>

1. 임신 25주가 지나면 태아는 뇌파를 가지게 된다.
2. 의식이 있는 성인은 뇌파를 가지고 있다.
- 
3. 그러므로, 임신 25주 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의식이 있는 성인을 죽이는 것만큼 나쁘다.

이 윤리적 추론에서 중요한 것은 1과 2가 모두 전제로서 타당한 것이나 두 진술이 모두 결론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1과 2가 사실이나 3은 가치에 관한 평가이다. 이는 사실과 가치 사이의 비약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도덕적 추론으로 볼 수 없다.<sup>19)</sup> 필자가 보기에 베이비 박스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논증을 펼치고 있다.

<추론 나>

1. 베이비 박스에 아기가 버려졌다.

18) Pence GE, 구영모, 김장한, 이재담 공역. 의료윤리. Classic Cases in Medical Ethics, 서울 : 광연재, 2003 : 12-13.  
19) Pence GE, 위의 글(주18), 13-15.

2. 베이비 박스는 인가받지 않은 시설이다.

3. 그러므로, 베이비 박스는 아기를 버리는 인가받지 않은 불법시설로 철거해야 한다.

<추론 가>와 마찬가지로 <추론 나>도 1과 2가 사실이나 3은 가치에 관한 평가로 타당한 도덕적 추론으로 볼 수 없다.

## V. 온정적 간섭주의에 근거한 베이비 박스 논쟁의 검토

온정적 간섭주의란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해 좋은 것을 강요하듯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타인의 선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온정적 간섭주의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당사자에게 선(善)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sup>20)</sup> 보건의로 전문가들은 온정적 간섭주의의 정당화 조건으로 환자의 무능력을 든다. 즉, 환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의 이익인지를 결정할 만한 능력이 없어야 한다.<sup>21)</sup> 필자는 온정적 간섭주의의 사례로 최근에 보도된 장기이식사례를 들어 보고자 한다. 2012년 2월에 각 신문사는 7개의 장기를 극적으로 이식받아 새 생명을 얻은 조은서 양(7세)의 일을 보도했다. 그러나 조은서 양의 이식수술은 불법으로 행해졌다. 담당의사인 서울아산병원 김대연 교수(48세·소아외과)는 수술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시술했다. 수술 전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센터 측은 “법률에 없어 이식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장기를 이식하는 날은 마음이 다급

했다. 뇌사자한테서 적출한 장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지만 돌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sup>22)</sup> 이에 대해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교수는 “위·대장 등의 장기이식도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법이 막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 범법자 신세가 됐다”며 “은서 양을 살릴 유일한 대안이 장기이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sup>23)</sup> 보건복지부는 이 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원중 보건산업국장은 “현행법에서 허용한 9개 장기 외에 이식하면 안 된다”며 “다만 다른 장기를 이식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 아산병원 이식건을 불법으로 몰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고 한다.<sup>24)</sup> 은서 사례와 베이비 박스 사례의 공통점은 김대연 교수와 이종락 목사는 관련되는 법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을 환자나 아기를 위해 행했다는 점이다. 두 사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관련되는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가능한 한 이성의 지도를 받게 하거나, 다른 견해도 허용되는 조건하에 토론에 부쳐지도록 해야 한다. 도덕은 무엇보다도 토의하는 조건하에 토의하는 이성의 문제이다. 어느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행해야 할 옳은 일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최선의 이유가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sup>25)</sup> 이는 은서의 사례나 베이비 박스 설치의 도덕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마

20) 구영모, 생명의료윤리란 무엇인가, 구영모 역음, 생명의료윤리, 파주 : 동녘, 2004 : 41.

21) Rae SB, Cox PM, 김상득 옮김, 생명의료윤리학, 서울 : 살림, 2004 : 34.

22) 중앙일보, '7개 장기 극적 이식' 은서의 기적, 알고보니 불법, 2012. 2. 18.

23) 중앙일보, 위의 글(주22), 2012. 2. 18.

24) 중앙일보, 위의 글(주22), 2012. 2. 18.

찬가지이다. 필자가 볼 때 두 경우는 모두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에 의해 정당화된다. 김대연 교수는 “법률에 없어 이식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서의 이익을 위해서 시술을 감행했다. 이와 유사하게 매년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지는 유아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 목사의 행위도 온정적 간섭주의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베이비 박스에 반대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베이비 박스가 없었더라면 버려지는 유아들 중에 몇몇은 친부모가 길렀을 것이라는 입장은 온정적 간섭주의에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입장은 사실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을 반박하기는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베이비 박스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유아들이 버려졌을지 버려지지 않았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현대 윤리학자 제임스 레이첼즈는 논박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로 심리학적 이기주의가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sup>25)</sup> 그 이론에 논박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 이론의 가장 심각한 오류가 된다고 말한다.<sup>27)</sup> 레이첼즈는 심리학적 이기주의가 논박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오류임을 설명하기 위해 로젠햄(Rosenham D) 박사의 실험을 예로써 소개한다. 이 실험은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을 때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sup>28)</sup> 이 실험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상

인이 정상적인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근무자들은 그를 정신병자로 보았다. 이 실험에 참가한 조사단원은 실험을 통해 일단 하나의 가정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것은 그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실험에 참가한 정상인들이 정신병자라는 가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병원의료진에게 그것이 확인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은 그 가설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관해 레이첼즈는 “만일 하나의 가설이 그 세계에 대해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조건과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때 그 가설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린다”고 말한다.<sup>29)</sup>

우리는 베이비 박스에 관해 반대하는 입장이 근거하고 있는 추측을 반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가설은 레이첼즈가 지적하고 있듯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반대 입장에서 온정적 간섭주의에 기인하여 친부모에게 버려지지 않았을 몇몇 유아를 가정하고 이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 불가능한 믿음으로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포기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된 유아보다 더 많은 유아들이 부모에 의해 포기되었고, 포기되고 있으며, 포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베이비 박스 논쟁과 관련하여 어느 쪽이 더 온정적 간섭주의에 가까운지를 말해 준다.

25) Rachels J. 위의 글(주9). 23.

26) Rachels J. 위의 글(주9). 110.

27) Rachels J. 위의 글(주9). 110-111.

28) "조사 단원은 어떤 의미로든지 완전하게 '정상적'이었으나, 그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라는 가정을 낳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그들이 모든 행동이 어떤 종류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징조라고 해석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Rachels J. 위의 글(주9). 111.

29) Rachels J. 위의 글(주9). 112.

## VI.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상보성 적용과 평가

우리나라는 서구적 성 개방과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사고가 공존하면서 미혼모라는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계층을 만들어 냈다. “어디 처녀가 애를 낳나”라는 강력한 부정적인 시선의 만연으로 그녀들은 자신의 아이라는 합법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 가정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고아가 되며,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찍힌다.<sup>30)</sup> 이 목사는 “국가가 버려지는 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왜 이런 게(베이비 박스) 필요하겠느냐”며 “지금은 아기를 버리는 부모를 처벌하는 법만 있을 뿐 버려지는 아기를 살리는 대책은 없습니다. 임신한 10대 여학생이 입양기관에 상담하러 가면 ‘아기 아빠와 같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아기 아빠인 남자친구가 도망가 버린 뒤라면 여학생은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sup>31)</sup> 아래 미혼모 유민희 씨와 10대에 출산한 혜원이의 사례를 살펴보자.

유민희 씨(29세 · 가명)는 26개월 된 아이와 둘이서 20만 원짜리 월셋집에서 산다. 정규직 비서로 일했지만 미혼모인 지금은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녀는 영어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일거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여 늘 불안하다. “애 낳기 전에는 연봉 3,000만 원을 받으며 회사에 잘 다녔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취직하려고 하면 결혼을 했는지 꼭 묻는다. 애만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게

제일 고민이다.”<sup>32)</sup>

2009년 고등학교 3학년인 혜원이(가명)의 봄은 다른 해와 같지 않다. 혜원이는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정도였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다. 혜원이는 낙태와 출산 사이에서 고민 하던 중에 병원에서 들은 아기의 심장 소리로 인해 출산을 결심한다. 양가 부모는 혜원이의 임신 소식에 충격에 빠졌지만 혜원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출산을 허락했고 아이의 친부인 사귀던 오빠와는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가족과는 달리 학교는 퇴학당하거나 그러기 전에 자퇴하라고 하였다. 혜원이는 며칠 동안 학교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고민하다 결국 자퇴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sup>33)</sup>

유민희 씨와 혜원이의 경우는 낙태를 하거나 아기를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대 한국의 실정을 감안하면 영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베이비 박스가 논란이 되면서 영아 유기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도 주목받고 있다. 영아 유기는 지난 1998년 1만 1천 명, 2001년 1만 여 명, 2008년에도 9천 200여 명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자녀의 양육 문제는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영아 유기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2010년에 영아 유기로 입건된 34명 중 65%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10대와 20대로 이 중 상당수가 미혼모인 것으로 밝혀졌다.<sup>34)</sup> 2009년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

30) Healthlog. 저출산 시대, 혼외출산과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2011. 3. 24. <http://www.koreahealthlog.com/3064>. 2012년 5월 5일 방문.

31) 한국일보. 위의 글(주5). 2011. 12. 1.

32) 중앙일보. 연봉 3000만 원 받던 20대여 "미혼모 되고..." 하소연. 2011. 11. 17.

33) 그것이 알고 싶다(715회). 선생님,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고3 임신부 혜원이의 선택 방송. 2009년 5월 9일 방송.

34) 민중의 소리, 강경훈 기자. 베이비 박스 논란, 버려지는 영아 급증... 취약한 미혼모 정책의 부작용?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449883>. 2012년 5월 5일 방문.

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는 20대가 52.7%로 미혼모의 과반수를 차지한다.<sup>35)</sup>

낙태와 혼전 출산과 연관이 있는 베이비 박스 도덕성 문제를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입장에서 논하기 위해 택시 기사의 불친절 문제를 사례로 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문성학 교수는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을 예로 들며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상호 보완성에 관해 설명한다. 일부 사람들은 택시 기사들이 불친절한 근본 원인을 택시 기사들의 월급체계에서 찾거나 더 나아가서 그런 월급체계를 만들어 낸 사회 제도 혹은 구조에서 찾고,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기사 개개인의 도덕성 결핍에서 찾는다. 전자의 입장, 즉 사회 윤리적 입장에 의하면 기사들이 난폭 운전과 불법적인 합승을 하게 되는 이유는 월급 제도에 있다. 즉 택시 기사가 불친절한 이유는 월급제도가 완전 월급제가 아닌 부분 월급제이고 거기다가 사납금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덧붙여 극심한 도로 정체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절, 안전, 준법운전을 하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해 굶어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기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사회 윤리적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 선다면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의 이유는 사회 제도 혹은 구조와의 연관성에서 고찰해야 한다.<sup>36)</sup> 후자의 입장 즉 개인 윤리적 입장에 의하

면 기사들의 불친절은 기사들의 개인적인 문제이다.

한편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본다면 사형 제도는 죄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개인 윤리에 기초하여 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에도 있다. 어려서 양친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라거나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경우 혹은 잘못된 사회 제도의 구조적 억압을 참지 못해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 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회의 어떤 특정 구성원의 범죄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다소간 공범으로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 사회에 만연한 뇌물 수수의 관행은 우리 국민 모두가 만든 것이기에 뇌물 수수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범죄에 우리는 직간접으로 다소간 관여하고 있다. 그렇다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개인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sup>37)</sup>

영아 유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기를 버리는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아기를 키우기에 힘든 사회적 환경의 탓도 없지 않다. 영아 유기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모든 개인의 행위는 개인 차원에서 충분히 분석될 수 있다는 개인 윤리적 전제를 가진 입장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행위는 개인적 차원에서 평가

35) "10대 미혼모의 경우 2000년대 접어들어 1990년대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1990년대 52.7%, 2000년대 53.5%) 2008년도 조사에서는 30.6%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10대 미혼모의 절대적 수치가 감소했다기보다는 30대 미혼모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미혼모의 연령층이 다양해진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전히 10대 미혼모는 의미 있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30대 미혼모는 2000년대 2.8%였지만 2008년도에는 16.7%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0대 청소년 출산은 2,065건으로 2005년 2,000건 미만(1,622건)으로 줄어들었으나, 다시 2007년부터 2,000건(2007년 2,336건)을 초과했다. 단 이 조사는 분만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진료비 청구가 없는 건은 제외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미혼모의 학력 등도 다양해진다는 것은 미혼모가 특정 일부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혼모들은 성인 미혼모의 경우 취업 시의 불리 또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현재와 향후 저소득층을 벗어나기가 힘들며,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정상적인 학업의 불가로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경우 미래에 비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시대, 혼외출산과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위의 글(주30).

36) 문성학. 삶의 의미와 윤리. 대구 : 형설출판사, 2009 : 149.

37) 문성학. 위의 글(주36), 295-296.

되고 분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도 평가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 유기는 미혼모나 장애 유아를 가진 부모에 의해 많이 저질러진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10대의 경우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고, 20대의 경우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된다. 정상적으로 결혼한 가정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제도가 보완될 경우에는 완화될 수 있다.

KBS의 프랑스 저출산 대책 심층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최근 출산율은 2.02명으로 유럽 최고의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펴왔다. 특히 아이를 많이 낳자는 구호보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 왔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프랑스의 국가 지원은 출산 이전부터 시작되는데 프랑스에서 임신 7개월이 되면 800유로(140만 원)가량이 부모 통장으로 입금되며 공립 병원의 출산 비용은 무료이다.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다가족 카드’를 받게 되고 대중교통 할인을 받게 되는데, 셋이면 30%, 넷이면 40%, 다섯이면 50%의 할인을 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이 육아 휴직을 하면 기본 수당 외에 매달 750유로(13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기다 휴가비와 이사 수당이 특별히 주어지고 주택 보조금과 연금납부 기간의 단축 등 혜택이 많다. 더욱이 영화관이나 식당을 비롯하여 옷이나 신발가게에서도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셋째 아이부터 ‘황금 덩어리’라고 부른다고 한

다. 프랑스 정부가 출산 및 양육 지원비로 쓰는 돈은 GDP의 4.7%인데 매년 880억 유로(15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아기는 생후 1년만 돼도 크레쉬라고 불리는 공립 유아원에 맡길 수 있다. 또한 프랑스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거의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sup>38)</sup> 이에 반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를 가족 정책을 위한 재정으로 지출한다. 이는 OECD 30개국 중 최하위로 OECD 평균(2.1%)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베이비 박스의 도덕성을 논할 경우에 영아를 유기하는 부모에게만 잘못을 돌릴 수 없는 이유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보완성에 있다. 개인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의 행위는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는 개인들의 행위로 구성된다. 영아 유기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극단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사회의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출산 정책의 미비가 영아 유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출산 정책을 위한 재원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 없다면 영아가 유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화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19와 소방소가 있다고 하여 그로 말미암아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29와 고아원이 있다고 하여 영아가 유기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베이비 박스는 위급한 처지에 놓인 영아들에게는 최선의 보호시설일 수 있으며, 출산 정책이 활성화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38) 2.1 연구소, 떨어진 출산율, 한국이 위험하다. 2011. 1. 14. <http://2.1well.or.kr/12?category=7> 프랑스 출산 정책에 관해 2.1 연구소의 2.1 자료실의 글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 VI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종종 생명의 가치는 법적인 현실을 넘어 있을 수 있다. 생명 의료 윤리학적 고민의 시작과 끝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또한 법적이라고 다 도덕적인 것은 아니며 불법이라도 도덕적일 수 있다. 법을 넘어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맥락적으로 타당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맥락적으로 타당한 진정성이 도대체 무엇인가고 물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사례를 들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간략하나 가능하면 다양한 도덕적 관점에서 베이비 박스와 관련된 입장들을 재구성하고 평가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필자는 베이비 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제 우리나라의 미혼모 보호정책은 매우 부실하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부모인 미혼모가 직접 양육할 경우 5만 원(24세 이하 청소년)의 양육비 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정부 정책이 오히려 영아 유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sup>39)</sup> 영아 유기 환경은 베이비 박스가 조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출산에 대한 사회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된 후에야 ‘영아 유기’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우선 이 목사의 베이비 박스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자살예방센터’가 있듯이, 영아를 유기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가칭 ‘영아유기예방센터’가 있어야 한다. 자살예방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하듯이 영아유기예방센터에서도 전화 상담을 해야 한다. 영아유기예방센터를 통해 출산 후에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아기를 입양 보내거나 사회보호시설에 위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혼모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들이 비밀리에 상담할 수 있고 출산과 자립을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기까지 이 목사의 베이비 박스는 긴급구호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목사의 베이비 박스를 철거하더라도 이 목사의 집 앞에 유아가 유기될 것은 예상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베이비 박스의 철거는 선행의 원칙<sup>40)</sup>과 온정적 간섭주의에 반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와 관악구청은 베이비 박스의 철거를 요구하기 보다는 이 목사의 베이비 박스 주변의 안내문 부근에 영아 유기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는 문건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미혼모지원센터의 전화번호나 보건복지부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학생 미혼모의 문제가 더 심각한 대만의 경우 2007년부터 ‘중고등학생 출산 휴가제’를 도입했다. 임신한 학생들에게 56일 동안의 출산 휴가와 최고 2년의 육아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격렬한 찬반 논란을 일으켰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다. 게다가 학생 임신부 전용 책상이나 10대를 위한 산부인과과

39) 민중의 소리, 강경훈 기자, 위의 글(주34).

40) 인간은 존엄하기에, 인간은 자기에게 과중한 부담이 없는 한 타인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윤리학에 서는 선행 원칙이라 한다.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0 : 313.

41) 그것이 알고 싶다(715회), 위의 글(주 33), 2009년 5월 9일 방송.

지 만들어 졌다.<sup>41)</sup> 이에 반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영아 유기를 결심한 10대는 베이비 박스가 있든지 없든지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최선의 방책은 버려지는 유아가 최대한 위협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현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각 고아원마다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여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출산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정비하여 이 목사와 같은 한 개인이 정책을 대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목사와 같은 종교인의 눈에는 버려지는 유아도 신의 자녀일 것이

다. 그러므로 그는 개인적인 고통은 도외시하고 그들을 모두 구하고자 하는 영웅적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 정책을 대신하여 사회의 모든 유아들을 책임질 수는 없다. 버려지는 유아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훌륭하게 성장해야 할 권리를 가진 인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㉞

#### 색인어

생명윤리, 베이비 박스, 온정적 간섭주의, 영아 유기, 영아 보호

## Dispute on Morality of Baby Box

JEONG Chang-Rok\*

### Abstract

There was dispute on 'baby box' in the second half of 2011. In 2009, clergyman, Lee Jong-rak made a baby box on church wall. Actually, 26 new born babies were abandoned in the 'baby box'. The babies who had disability were thrown out from the unmarried mothers with letters. If there was no baby box, the babies could die by hypothermia in the cold weather. Bu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Gwanak Ward Office are requesting to remove baby box because it is illegal for non-authorized facility to look after baby. Baby box was installed to prevent from abandonment of baby in cold weather and risk. But it is on dispute between 'protection of infant' and 'encouragement of abandonment'. Like dispute surrounding abortion or contraception, baby box is a complicated problem and it is not easy to conclude. It is a difficult subject that anybody cannot judge awkwardly. This is because the subject is related to human life. This thesis tried to evaluate this problem from ethical view. First, contradictory views are reviewed - the views are if baby box is for encouragement of abandonment, or if it is for protection of infant. Second, this problem is investigated from positions of Deontology and Teleology which are representative views of ethics. And this paper applies principles of modern medical ethics from the dispute to evaluate the problem. Finally, this subject is treated with from positions of personal ethic and social ethic.

### Keywords

bio-medical ethics, baby box, paternalism, infant abandonment, infant protection

---

\*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